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상호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22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  
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합니다.

□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의 개설과 운영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법률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운영하는 도매시장에 대하여 과도한 권한 제한과 침해를 규정  
하고 있어 반자치적, 위헌적인 조항들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예로 농안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매시장의 관리  
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업무규정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농안법 시행규칙에서는 제1호에  
서 제36호까지 승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도 부족하여 포괄규

정인 제37호를 통하여 사실상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승인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고심 끝에 판매장려금 범위의 인상 그리고 하역근로자를 위한 시설의 무상 제공을 각각 반영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을 거부하여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의결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자치입법이 중앙정부의 행정입법에 의하여 제한받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시장에 대한 업무규정을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과 승인대상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재지정과 평가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사용료·부담금 등 도매시장 관련 비용을 정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을 허용하고 하역근로자의 근로환경 보장을 위하여 하역근로자의 대기실과 사무실을 도매시장 필수시설에 포함하도록 농안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